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가단519745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경목, 조용현, 손태홍

변 론 종 결 2022. 3. 22.

판 결 선 고 2022. 4. 5.

주 문

1.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9. 6. 21.(등기기록상으로는 2015. 10. 10.)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D에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6. 26. 접수 제180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의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6. 21.(등기기록상으로는 2015. 10. 10.)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18,461,538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8,461,5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는 2016. 3. 18. F 주식회사(이하 'F')에게 450,000,000원을 대출해주었고, D는 F의 E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585,000,000원을 보증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E는 2019. 1. 30. 원고에게 F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00018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8. 18. 「피고(= D)는 원고에게 501,774,306원 및 그중 281,343,557원에 대하여 판결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585,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D의 부(父) G이 2015. 10. 10. 사망하였고 그 당시 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상속지분 3/13)와 자녀들인 H, D, I, J, K(상속지분 각 2/13)이 있었는데, 이들은 상속재산인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분할협의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6. 26. 접수 제18065호로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원고는 피고와 D 사이의 '2019. 6. 21.자 상속재산 분할협의'(원고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일을 "2019. 6. 26."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9. 6. 21.'의 오키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판단한다)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속재산 분할협이는 2015. 10. 10.경에 이미 이루어졌고,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만 2019. 6. 26. 뒤늦게 마쳐진 것이므로, 2015. 10. 10.부터 기산하면 2021. 8. 1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5년의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피고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2015년 10월 10.일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 시 원인증서로 제출된 갑 제7호증(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에는 그 계약일이 "2019년 6월 21.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등기기록에 기재된 등기원인 및 그 일자를 진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2015년 10월 10.일"은 G이 사망한 날로서 그 사망 당일 바로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인의 상식이나 경험에 반하고, 만약 그렇다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3년 이상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 앞으로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등기기록에 기재된 그대로라고 믿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7호증에 명확하게 기재된 바와 같이 2019. 6. 21.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019. 6. 21.부터 기산하면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5년의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다. 결국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 1) 앞의 기초사실과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6. 21. 당시 D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판결로 확정되기 전의 보증금채권(내용상으로는 갑 제1호증의 판결로 확정된 것과 동일하다)을 가지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F가 E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을 받을 때 E가 F에 대한 채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F 및 보증인 D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약정하였는데, E가 F 및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채권양도는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2019. 6. 21. 당시 D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3) 살피건대, 을 제5호증 중 제17조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E가 사전에 F와 D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야만 F에 대한 채권을 양도할 수 있기로 F 및 D와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은 특약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가 F와 D에게 위 채권양도에 대한 동의 여부 및 양도금지특약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와 같은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E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양도는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 1) D가 2019. 6. 21.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2/13 상속지분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원고가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지 않고 있다.
- 2)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 3) 결국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D가 위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위 상속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고, 이 경우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13 지분

갑 제5호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해서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6. 26. 접수 제18065호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 각 2/13에 관한 2019. 6.

21.(등기기록상으로는 2015. 10. 10.)자 분할협의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D에게 D의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의 2/13 지분

갑 제6호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6. 26. 접수 제18065호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 2/13에 관한 2019. 6. 21.(등기기록상으로는 2015. 10. 10.)자 분할협의도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은 ‘2021. 5. 13. 매매’를 원인으로 2021. 7. 9.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실거래가액도 “1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L이 D의 사해행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전득자인 L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의인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에게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보면,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근접한 시점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거래가를 그대로 등기한 위 120,000,000원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중 D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18,461,538원(= 120,000,000원 × 2/13)인데, 이 금액은 위 사해행위일인 2019. 6. 21. 당시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기준의 원고의 각 피보전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는 18,461,538원 전액 한도 내에서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D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취소된 그 금액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2019. 6. 21.(등기기록상으로는 2015. 10. 10.)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D에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6. 26. 접수 제180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의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2019. 6. 21.(등기기록상으로는 2015. 10. 10.)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18,461,538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8,461,5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근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제1 목록]

1. 경기도 여주시 M, 전 1,236㎡
2. 경기도 여주시 N, 전 231㎡
3. 경기도 여주시 O, 전 228㎡
4. 경기도 여주시 P, 전 132㎡. 끝.

[제2 목록]

1. 경기도 여주시 Q, 전 1,002㎡. 끝.

